

신한BNPP 동서햇빛드림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투자대상사업 모집 공고

당사에서 설정예정인 신한BNPP 동서햇빛드림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이하 “신한BNPP 동서햇빛드림펀드”)에서 투자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인프라센터장

1. 투자대상사업 선정 용량: 태양광 발전사업 150MW (PV용량기준)

2. 투자대상사업 참여 자격

- 1)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허가 및 2020년 2월말까지 관련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닌 사업인 경우 개발행위없이 착공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로 대체)를 득하였고 2020년12월말 까지 상업운전개시가 가능한 사업이어야 함
- 2) 태양광발전소 인근 한전 배전선로 계통연계를 이미 확보하여야 함
- 3) RPS시범사업 또는 RPS 판매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된 발전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에 의한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않아야 함
-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의무화대상으로 설치된 설비가 아니어야 함
-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의하여 인증된 설비를 사용 및 제시하여야 함
- 7) 타공급의무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없고 현재 낙찰 또는 매매계약 체결 진행 중이 아닌 발전소만 참여할 수 있음 (다만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주관하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에 참여중인 사업도 본 공고에 참여는 가능하나, 만약 본 투자대상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경쟁입찰공고에도 선정되는 경우 본 공고에 의한 투자대상사업 선정은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8)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의 발급을 받지 아니 하여야 함

- 9) 수상태양광 사업 제외
- 10) 발전사업 규모: 900kW 이상(설치기준)임. 다만, 사업시행법인별 발전사업들을 그룹화한 사업¹의 설치규모가 2,700kW이상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11)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20년) 동안 예상 세후 사업수익률(Project IRR)이 5.0%이상(보장발전시간 적용下)인 사업
- 12) 인버터와 모듈 및 변압기는 국내생산(Made in Korea) 기자재 100%사용 원칙(단, 인버터에 한하여 공고일 이전 계약이 기 체결되어 있는 경우 예외로 함. 이 경우 설치예정인 인버터가 기재된 계약서 등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 13) 지붕형(roof-top) 태양광 사업의 경우 펀드 약정액의 10%미만 투자예정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투자대상사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투자대상사업 선정 일정 및 제출서류

- 1) 공고 기간 : '20년 4월 24일(금)~'20년 5월 1일(금)
- 2) 질의서 제출 기간 : '20년 4월 29일(수)~'20년 5월 1일(금)
 - ① 질의서는 붙임 5)질의서 양식을 활용해서 제출해야 함
- 3) 질의서에 대한 답변예정일 : '20년 5월 8일(금)(다만, 질의량이 많은 경우 늦어질 수 있음)
- 4) 서류 접수 기간 : '20년 5월 11일(월)~'20년 5월 14일(목) 12:00까지
 - ① 서류 접수 마감일 12:00까지 사업 참여서 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② 입찰마감 당일에는 신청건수의 폭증으로 시스템 과부하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마감 1일전까지 제출완료 요망
- 5) 서류 접수 방법 : 이메일을 통해 접수
 - ① 이메일주소 : Ewp_green@shbnppam.com
 - ② 대용량 첨부 전송 기능(링크형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 첨부파일 형태로 전송하여 누락되는 경우 사업자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③ 이메일 접수가 원활하지 않아 접수가 힘든 경우 당사(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9층) 리셉션 데스크에서도 USB 외부메모리를 통해 접수 가능함

¹ 그룹화한 사업이라 함은 연접한 부지(발전소 사이 최소이격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서 동일한 시공사가 시공하는 사업을 의미함

- 6) 선정 결과 발표 : '20년 5월 20일(수) 15:00(예정, 다만 평가가 늦어지거나 당사 내부사정으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지예정)
- ① 신한BNP파리바 홈페이지 : www.shbnppam.com (공지·공시 → 수시공시)
 - ② 선정결과 발표 후 순차적으로 금융약정 및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이하 "REC") 매매계약 진행
- 7) 사업선정 참여 접수 시 제출서류: 별첨1) 신한BNPP동서햇빛드림펀드 투자대상사업 선정 참여를 위한 제출 서류 참고
- 8) 투자대상사업으로 선정되더라도, 기획재정부 출자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본 공고가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투자대상사업 선정시 혜택

- 1) 태양광(PV) 사업에서 발생하는 REC에 대해 한국동서발전(주)와 20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SMP+REC 고정가격계약 체결예정
- 2) 추후 태양광 연계형 ESS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ESS의 REC는 한국동서발전(주)와 협의 하에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때의 ESS REC 고정가격 또한 추후 협의 예정

5. 투자대상사업 선정시 준수사항

- 1) 지분 투자: 투자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투자비의 최소 10%이상은 자본금으로 납입되어야 하며 사업시행법인 자본금의 최소 20% 이상은 한국동서발전(주)가 투자한 신한BNPP 동서햇빛드림펀드로부터 누적적 우선주로 투자되어야 함. 만약 지분율 25%이상의 자본금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한BNPP동서햇빛드림펀드는 보통주로의 투자도 가능함. 누적적 우선주의 투자조건은 아래와 같음
- ①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6.0]%를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금전으로 배당(대출약정서상 배당가능 조건 충족시)
 - ② 어느 사업연도에 우선 배당을 전부 또는 일부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에 연 복리 [6.0]%를 적용한 금액을 그 이후 사업연도의 배당시점에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당
- 2) 대출 조달: 투자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당사에서 2020년 5월에 설정예정인 신한BNPP 그린햇빛드림펀드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며, 그 대출금액은 최대 총 투자비의 90%이고 대출금리는 아래와 같음
- ① 대출금리는 상환기간에 따라 유동적이며, 보장발전시간 적용下에서 대출 상환기간이 운영개시

일로부터

- A. 16년 미만인 경우: 4.19%
- B. 16년이상 17년 미만인 경우: 4.29%
- C. 17년이상 18년 미만인 경우: 4.39%

② Roof-top 태양광의 경우에는 위 금리에서 0.2% 가산

③ 대출상환스케줄은 대출기간동안 매년 운영비 지급후 단순DSCR²이 최소 1.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3) **투자가이드라인 준수:** 투자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최소한 별첨2) 투자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 4) **각종 사업관련계약 체결:** 투자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법무법인에서 제공하는 표준대출약정서, 표준주주협약서, 표준공사도급계약서, 표준관리운영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일부 수정이 가능함
- 5) **각종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투자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한 BNPP 동서햇빛드림펀드가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술검토보고서, 사업성검토보고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한 용역비용 및 사무신탁 수수료(매년), 대리금융기관 수수료(매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6. 투자대상사업 선정 평가기준

- 1)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 사업자 중 참여자격을 만족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기준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배점
재무적 평가 (75점)	입찰가격	{(상한가격-입찰가격)/상한가격}*배점 ※상한가격 = 156.57원	60
	세후사업수익률 (Project IRR(%))	(제시수익률-5.0%) x 100 x 배점	5
	재무모델의 적정성	세후사업수익률 산정 / 대출기간에 따른 적정 대출금리 적용/ 재무모델 전반의 오류여부 (적정 5점, 경미한 오류 3.5점, 중대한 오류 2점)	5

² 운영비 지급후 단순DSCR(Debt Service Coverage Ratio)=연도별 순가용현금흐름(매출액-각종운영비-법인세)/(당해연도 상환예정인 원금과 당해연도 이자비용)

기준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배점
	각종 계약서 주요내용에 대한 수정의견	각종 계약서 주요내용(별첨 3 참고)에 대한 수정의견 (의견 없음 5점, 경미한 변경을 요하는 의견 3.5점, 중대한 변경을 요하는 의견 2점)	5
사업 평가 (15점)	사업진척도	1) 공사계획신고 완료된 사업(혹은 이에 준하는 즉시 착공 가능한 인허가 서류가 구비된 사업): 2점	2
		2) 상업운전 예정 시점 ^{주1)} : 2020년 8월이내 3점, 10월이내 2점, 12월이내 1점, 이후 0점	3
	사업계획서 평가	1) 태양광사업 입지평가(환경, 민원포함) 2) 시공계획의 적절성 여부 3) 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능력 4) 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극대화 방안 *사회적 가치 : 안전, 상생협력,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공헌 등 *우수 5점, 보통 3.5점, 미흡 2점	5
	사업규모	(사업시행법인의 발전사업허가규모(kW)-900kW)÷1,000 *최대 5점(단, 동일사업주 최대 10MW 까지 허용)	5
참여자 평가 (10점)	EPC ^{社주2)} 시공실적	(EPC 시공실적(MW)-10MW)÷10 *최대 5점	5
	O&M ^{社주2)} 운영실적	(관리운영실적(MW)-10MW)÷10 *최대 5점	5
합 계			100

주1) PF 인출일을 5월 30일로 가정할 것 / 제시된 시점 이내에 상업운전개시 미달시 페널티 부여

주2)공동수급체의 경우 양 사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함

2) 관련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별첨1) 제출서류 순서에 따라 제출

- ① 세후사업수익률, 대출기간동안 매년 운영비 지급후 단순DSCR이 최소 1.0 이상이 되는 대출상환 스케줄에 따른 적정 대출금리 적용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재무모델(별첨4 재무모델 작성시 주요 가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무모델 작성 필요)
- ② 각종 계약서 주요내용에 대한 수정의견(붙임 4 참고)
- ③ EPC시공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타 사업에서 사업시행자와 EPC사 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날인본 일부(발전사업용량이 확인되어야 하고 원도급만 인정함. 원도급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는 제외함) 혹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신재생에너지설비 공사실적증명서(발전사

업용량이 기재되어야 함)

- ④ EPC사의 경우 별첨2)투자가이드라인 상의 시공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하는 서류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날인한 중소기업확인서(공동수급체의 경우 한 회사만 제출하면 됨)
- ⑤ 관리운영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타 사업에서 사업시행자와 관리운영사간에 체결한 관리운영계약서 날인본 일부(발전사업용량이 확인되어야 하고 원도급만 인정함. 원도급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는 제외함)

7. 투자대상사업 선정

- 1)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동점 발생 시 아래의 경우를 우선하여 선정함 (①>②>③)
 - ① 재무적 평가 점수가 높은 순
 - ② 사업평가 점수가 높은 순
 - ③ 참여사평가 점수가 높은 순
- 2) 공고용량과 선정용량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거나 재무적 평가 점수, 사업평가 점수, 참여사 평가 점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 추가로 선정함
- 3)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 참여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임

8. 투자대상사업 선정 참여 유의사항

- 1)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의 체결
 - ① 투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통보 후 순차적으로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및 금융약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함
 - ②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③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은 태양광 생산량 전량 매도로 하며 계약기간은 20년으로 함 (단, ESS는 15년으로 함)
 - 계약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 : 계약일로부터 20년
 - 계약일 이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 :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
 -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20년이 아님

2) 매매계약 체결 예시

① SMP+REC = 156원/kwh(가중치1.5, 육지)으로 낙찰된 사업자의 경우 아래의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

- SMP(89,980원)+REC(156,000원-89,980원)×가중치(1.5) = 189,010원(원단위 절사, MWh 기준임)

※ REC 계약단가는 원단위 절사하여 지급

② 투자대상 사업자에 선정된 사업자가 추후 신재생연계형 ESS를 추가 설치할 경우

- [ESS 기여분]: 기존 계약된 신재생설비의 연간 REC 예상 매매량 보전을 위해 ESS 설비의 연간 REC 공급량의 일정 비율(신재생설비 REC 손실량)을 준공 후 60일 이내에 한국동서발전과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함

(예시) 태양광설비의 연간 예상 REC가 1,200REC/년이었으나, ESS 설치 후 태양광 설비의 연간 REC가 600REC만 생산될 경우, 부족분은 ESS 설비의 REC로 보전하여 공급해야 함 (계약단가는 태양광 계약단가와 같음)

- [ESS 추가분]: 기여분을 제외한, ESS의 REC는 양사의 협의 하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때 ESS의 고정가격은 추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함

3) 발전소 준공 기한의 준수

① 투자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제시한 상업운전 예정시점 내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 전 검사를 완료하여야 함

4) 설치용량의 준수

① 투자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자입찰 참여서』에 발전사업 허가용량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기사업법에 의거 사용전검사 시 발전사업허가용량의 ±10% 범위(90~110%) 이내 여야 함

5) 인증제품 설치의무화 등

① 투자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반드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된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② 투자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붙임2)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제품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6) 사업의 양도 양수

① 투자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매매계약 체결 후 가능함)

7) 투자대상 사업 선정 무효화 사항

① 입찰자가 사업을 취소한 경우

- ②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 ③ 사용전검사 설비용량이 발전사업허가용량의 ±10% 범위를 초과한 경우
- ④ 타공급의무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는 발전소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
- ⑤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27조제7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⑥ 접수마감일 이전까지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
- ⑦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에 의한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경우
- ⑧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의무화대상으로 설치된 설비인 경우

8) 사업참여서의 수정 제출

- ① 사업참여자는 제출 완료한 사업참여서류를 제출마감 기한 이내에 한하여 수정할 수 있음

9. 의무이행 준수

1) 사업제안 이행의 준수

- ① 공급인증서 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준공기한 내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시 연간 예상공급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금액을 일할 계산한 지체상금을 한국동서발전에게 납부해야 함
- ② 사업자는 사용전검사 완료 후, 국내 생산 주기자재(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변압기)의 사용 증빙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내 생산 주기자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따른 강도 높은 불이익 조치를 취할 예정임. 예를 들어 기 체결된 SMP+REC 고정가격을 20%이상 낮춘 가격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비를 조정하는 등 당사 투자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실행할 예정임

2) 계약 이행의 준수 (계약보증금)

- ① 공급인증서 판매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 ② 계약보증금은 계약기간 중 연간 예상 공급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금액으로 함

※ (예시) 태양광 1MW 156원 / 육지 기준

$$1,314\text{REC} \times (156,000 - 89,980) \text{원} / \text{REC} \times 10\% \approx 867\text{만원}$$

10. 기타 사항

- 1) 『신한BNPP동서햇빛드림펀드 투자대상사업 선정 참여서』의 구비서류 중 하나의 서류라도 허위일 경우는 투자대상사업 선정은 취소됨
- 2) 투자대상사업 선정 결과에 대한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3) 사업자가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상태에 있거나 과거 법령 또는 시정명령 이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성실한 사업의 실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이 배제됨

※ 투자대상사업선정 참여자는 본 사업의 공고문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붙임 서류 서식 미이용, 제출서류의 누락 및 미비, 서류 제출의 미완료 등은 탈락사유가 되며, 참여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붙임 서류

- 1) 신한BNPP동서햇빛드림펀드 투자대상사업 선정 참여서
- 2) 사업계획서
- 3) 투자대상사업 평가기준 자기평가서
- 4) 각종 계약서 주요 내용에 대한 수정의견
- 5) 질의서 양식

◎ 신한BNPP동서햇빛드림펀드 투자대상사업 선정 관련 문의

☞ 질의서를 통해 일괄 답변 예정이며 질의서는 메일(Ewp_green@shbnppam.com)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02-767-5776로 문의

별첨1) 신한BNPP동서햇빛드림펀드 투자대상사업 선정 참여를 위한 제출서류

서류 목록 및 순서	제출시 파일명
① 투자대상사업선정 참여신청서(붙임1)	[]태양광발전소_1.참여신청서
② 사업계획서(붙임2)	[]태양광발전소_2.사업계획서
③ 투자대상사업 평가기준 자기평가서(붙임3)	[]태양광발전소_3.자기평가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태양광발전소_4.사업자등록증
⑤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1부 (임시허가증 불인정)	[]태양광발전소_5.발전사업허가증
⑥ 개발행위허가증 사본 1부 (임시필증은 불인정,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닌 사업인 경우 개발행위허가 없이 착공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태양광발전소_6.개발행위허가증
⑦ 태양광발전소 인근 한전 배전선로 계통연계 확보 증빙서류(납부고지서, 공문, 관련 이메일이나 서류 등)	[]태양광발전소_7.계통연계증빙서류
⑧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확인서류(혹은 이에 준하는 즉시 착공 가능한 인허가 서류) 사본 1부 (있는 경우)	[]태양광발전소_8.공사계획신고서
⑨ 기체결된 인버터 관련 계약서(있는 경우)	[]태양광발전소_9.기체결계약서
⑩ 재무모델: 엑셀파일로 제출	[]태양광발전소_10.재무모델
⑪ 각종 계약서 주요내용에 대한 수정의견(붙임 4 참고)	[]태양광발전소_11.각종 계약서 주요내용에 대한 수정의견
⑫ 타 사업에서 사업시행사와 EPC사 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날인본 일부(발전사업용량이 확인되어야 함. 원도급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는 제외함) 혹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신재생에너지설비 공사실적증명서	[]태양광발전소_12.EPC시공실적
⑬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하는 중소기업확인서(공동수급체의 경우 한 회사만 제출하면 됨)	[]태양광발전소_13.중소기업확인서
⑭ 타 사업에서 사업시행사와 관리운영사간에 체결한 관리운영계약서 날인본 일부(발전사업용량이 확인되어야 함. 원도급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는 제외함)	[]태양광발전소_14.관리운영사 운영실적

※ 재무모델은 엑셀파일로, 이외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하고 전체파일을 ZIP파일로 압축하며 파일명을 “[]태양광발전소_신한BNP투자대상참여”로 함

※ 8번과 9번 서류를 제외한 다른 서류 누락 시 귀책 사유로 탈락

별첨2) 투자가이드라인

구분		내용
투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C별 발전사업 규모: 900kW 이상(설치기준), 다만 SPC별 발전사업들을 그룹화한 사업^{주1)}의 설치규모가 2,700kW이상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된 사업 • 사업수익률(Project IRR)이 연 [5]%이상인 사업 (보장발전시간 적용下) • 태양광발전소 인근 한전 배전선로 계통연계를 확보한 사업 • Ground 태양광 사업에 총 펀드 약정액의 [90]%이상, Rooftop태양광 사업에는 [10]% 미만 투자 예정
부지	Ground 태양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사업법인이 소유한 부지 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부지 또는 • 선순위근저당권 혹은 지상권 혹은 임차권 등 토지사용권리 확보가 가능한 부지
	Rooftop 태양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건축물 또는 • 선순위근저당권 혹은 지상권 혹은 임차권이 설정 가능한 건축물 또는 • 임대인의 신용등급^{주2)}이 A+ 이상이거나 Roof-top 태양광 관리운영사가 임대차계약 이행을 보증한 경우 또는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기부 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실시협약이나 각종법령 등으로 이용/처분/용도변경에 제한이 있는 건축물
발전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 에너지센터로부터 인증 받은 설비의 사용 • 인버터와 모듈 및 변압기는 국내생산 기자재 100%사용 원칙(단, 인버터에 한하여 계약이 기 체결되어 있는 경우 예외로 함.) • EPC 또는 O&M사가 일정기간 동안 발전시간 보장을 제공하는 설비
시공사 (신규건설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시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 아래의 신용등급 혹은 실적 중 한 개 이상 충족하는 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채 신용등급^{주3)} BBB 이상 회사 또는 동 신용등급 이상의 회사로부터 관련계약 이행에 대한 보증을 제공받는 회사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국내외 태양광 시공실적 10MW 이상 보유 회사 ✓ 최근 3년간 국내외 20MW이상의 태양광모듈 공급실적 보유 회사 <p>• 상기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해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며 이 경우 공사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연대책임 및 중소기업자의 30%이상 참여조건 필수</p>
Ground 태양광 운영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조건 중 한 개 이상 만족하는 운영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채 신용등급^{주3)} BBB 이상 회사 또는 동 신용등급 이상의 회사로부터 관련계약 이행에 대한 보증을 제공받는 회사 ▶ 국내외 태양광 운영실적 10MW 이상 보유 회사
Rooftop 태양광 운영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채 신용등급^{주2)} A 이상 회사 또는 동 신용등급 이상의 회사로부터 관련계약 이행에 대한 보증을 제공받는 회사가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해당시점의 잔여대출원리금 채무인수하고 F지분 액면가 인수 ▶ 태양광 시설 혹은 임대목적물이 속한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보험계약으로 보상되지 않거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관리운영사가 부담
기술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시 구조물 안정성, 발전설비 성능, 예상발전시간 적정성을 포함한 기술용역 보고서 수령 (보고서상 문제사항 치유시 최종 준공금 지급) • 기술실사업체의 경우 10개 사업 및 10MW이상의 태양광발전사업 기술용역 실적 보유한 회사일 것

주1) 그룹화한 사업이라 함은 연접한 부지(발전소 사이 최소이격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서 동일한 시공사가 시공하는 사업을 의미함

주2)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중 1곳 이상의 회사채 또는 기업신용등급

주3) 회사채 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받은 유효한 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가능

별첨 3) 각종 계약서 주요내용

1) 주주협약 주요내용(우선주 20%만 참여하는 경우)

구분	주요내용
자본과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출자자 이외의 출자자는 재무출자자의 출자 이전에 출자금 전액을 납입 하여야 함 • 재무출자자는 주주협약에 정한 최종 지분내역 상 출자금액 외에 출자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본 협약에 따른 대상회사의 신주 발행결정이 있는 경우 그 선택에 따라 추가적으로 그 신주를 인수할 수는 있으나, 그 신주에 대한 인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함.
출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비율 : 전략출자자(보통주 80%), 재무출자자(우선주 20%)
우선주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6.0]%를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금전으로 배당 • 어느 사업연도에 우선 배당을 전부 또는 일부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에 연복리[6.0]%를 적용한 금액을 그 이후 사업연도의 배당시점에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당 • 회사의 청산 시 잔여재산에서 액면금액과 제 2호의 누적된 미배당분을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분배 • 의결권 없음
전략출자자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회사에 대한 지분 출자 • 이권 사업과 관련한 사업부지의 확보 • 이권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주무관청의 승인, 인가, 면허, 동의 또는 신고수리 등 취득 및 이행 • 이권 사업의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 중 필요한 주민동의 획득 및 민원을 자신들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해결 • 기타 주주협약서에서 정한 역할과 의무
주식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출자자는 재무출자자의 출자 자본금이 전부 회수될 때 까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 양도, 기타 다른 방법 등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로 동 주식을 제공할 수 없음(재무출자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은 제외) • 재무출자자는 전략출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양

구분	주요내용
	<p>도할 수 있음. 다만, 재무출자자는 전략출자자에게 해당 재무출자자 보유주식을 매수할 것인지 여부를 사전에 최고하여야 하며, 전략출자자가 양수할 것을 통지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양도 예정가격 또는 주주협약서상 우선매수행사 금액으로 해당 주식을 전략출자자에게 양도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출자자는 이건설업시설의 운영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무출자자의 사전서면 동의를 얻어 그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음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전략출자자는 운영 개시일로부터 각 (i) 5년이 경과한 시점, (ii) 10년이 경과한 시점, (iii) 15년이 경과한 시점 및 (iv) 20년이 경과한 시점에 매수대상 주식 및 매매대금^{주1)}을 기재한 매수청구서면을 재무출자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재무출자자 보유주식에 대한 주식매수 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음.
주주총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의장이 됨 • 주주총회의 결의는 본 협약 또는 정관 및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한 회의에서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짐 • 다만, 재무출자자의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사업 시행법인에 ESS와 같은 설비의 추가 투자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보유함

주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 (1) 주식액면금액 + (2)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시점 이전의 누적 미배당분 + (3) 행사시점 이후 운영 종료 시점(20년)까지의 잔여기간에 대해 액면금액 기준으로 연[6.0]%로 산정한 이익배당 예정금액을 5%로 할인한 금액

2) 대출약정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대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대출금 대출약정으로 RPS 해당사업인 태양광발전소 건설 제반 비용, 대출관련 금융비용 및 DSRA 등으로 사용 예정
대출금 인출가능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약정서 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i) 대출약정서 체결일로부터 [12]개월 되는 날, (ii) 대출금이 전액 인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
기한전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개시일로부터 5년간: 조기상환금지, 5년이후 10년간 조기상환: 원금의 2.0%, 그 이후 조기상환 원금의 1.0% • 단, 다음의 경우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주가 대주들과 합의하여 자체 잉여현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 자금관리기관이 집합투자업자로서 운용중인 투자신탁이 신규 금융에 참여하는 경우 ▶ 비자발적 조기상환의 경우
담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계좌에 대한 근질권/ 계약상의 권리에 관한 채권양도담보 • 전력판매대금채권에 대한 채권근질권/ •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근질권 • 주식에 대한 근질권 / 본건 사업시설에 대한 동산양도담보권 • 책임준공확약서, 책임운영확약서, 출자자약정서, 사업시행권포기각서,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 차주 소유 사업부지에 대한 근저당권
주요 최초인출선행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주, 출자자, 시공사 겸 관리운영회사 관련 서류 및 자기자본의 납입 확인 • 각종 사업서류(공사도급계약, 관리운영계약, 일반사무위탁계약, 신재생에너지 설비확인서 및 품질보증서, REC 매매계약서) • 사업 인허가 관련 서류/ 보험 관련 서류/ 공사 관련 서류 (기성금 관련) • 담보서류 관련 서류 •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변압기 공급계약서 사본(신규건설의 경우) • 변호사 법률의견서 및 최초인출선행조건 충족에 대한 법률의견서
주요 최종인출선행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 관련 서류 : 사용전검사필증 사본, 사업개시신고 수리 접수증, 전력거래소의 계통승인공문 등 • 준공기성 관련 서류 • 유보계좌로 SMP입금계좌가 신고 되었다는 증빙 • 운영기간 보험의 부보 및 관련 서류 제출 • 기술검토보고서 및 기술검토보고서 검토사항에 대한 치유 완료

구분	주요내용
제한된 지급 (배당금지급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하여 존속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유보계좌 자금집행항목의 선순위 항목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졌을 것 • 직전 회계연도의 DSRA제외한 누적 DSCR이 1.3 이상일 것 • 직전 회계연도에 부채상환적립금의 인출이나 사용이 없었을 것 • 직전연도 평균 발전시간이 공사도급계약서 혹은 관리운영계약서 상 보장발전시간 이상일 것 • 부채상환적립금, 대수선비적립금이 전부 적립되었고 지급기일이 도래한 대출원리금이 모두 상환되었을 것 • 차주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없을 것
책임준공 확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준공이라 함은 천재지변,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여하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예정일까지 상업운전 및 준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을 의미함 • 실제상업운전이나 실제준공이 예정시점보다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시공사는 차주의 잔여대출원리금 및 재무출자자의 출자원리금(출자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연 6% 복리로 산정한 금액)을 대주 및 재무출자자에게 지급하기로 함

3) 공사도급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책임준공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인은 이 계약에서 정하여진 조건에 따라 이 공사를 적기에 준공해야 하며, 공사금액은 확정된 금액으로 대출약정서상의 대주들 및 도급인의 사전동의가 없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금액을 조정 할 수 없으나, • 수급인들의 귀책없는 설계변경 등 수급인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도급인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들은 도급인에 해당 공사대금 상당액을 후순위조건(대출약정서에 정의함)에 따라 대여하여야 하며, 대출약정서상 대주에 대한 대출원리금이 모두 상환된 이후에 이를 도급인으로부터 상환받음 •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를 받는데 지장이 없고, 대출약정서에 따라 본건 사업시설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준공하여야 함 • 공사비의 증가, 공사 지연 등 본건 사업시설의 시공과 관련한 소요자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수급인은 본건 사업시설을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책임준공하여야 함 • 수급인들은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이건공사를 준공예정일까지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 이로 인한 도급인 및/또는 대주의 제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수급인들은 이 약정서에 정한 수급인들의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함. 어느 수급인들이 어떠한 사유로 이 약정서에 정한 수급인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급인들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 약정서에 정한 수급인들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함
대금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금금 : [50% 한도] _ 책임감리자의 기성확인(혹은 선금금반환보증서) 및 대출약정서상 최초 인출선행조건 충족시 • 기성금 : [선금금 포함 누적 90%한도] _ 사용전검사 완료 및 대출약정서상 최종인출선행조건 충족시 • 준공금 : [10%] _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 수령시
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전까지 본 건 사업의 수행 및 시공과 관련된 민원은 수급인의 책임 및 비용으로 처리함
하자담보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도급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하자보수보증증권 제출 • 태양광 발전설비 하자보수기간: 태양광모듈에 관한 공사의 경우 36개월, 그 외 건축물의 경우 60개월
보험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보험(제3자 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된 건설공사보험), 예정이익상실보험 및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은 수급인이 도급인 및 수급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구분	주요내용
	보험기간을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상업운전개시일까지로 하여 일괄 가입함
발전시간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발전시간보장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말까지 • 보장 발전시간: []시간 (매년 0.5%씩 감소) • 일평균 실제발전시간이 일평균 보장발전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3년단위로 발전시간 보장 기간이 연장됨
담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급인증서매매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보장발전량 미달시의 자금보충금액과 공급인증서 매매대금 부족분에 대한 자금보충금액의 합계액을 배상함 •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상 사용전 검사 완료 미준수 또는 공급인증서 공급량 미달로 인하여 과징금 기타 배상금이 부과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받는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동 비용을 제공하여야 함 •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본건 사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업발전이 중단되어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자금의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해당 부족자금을 제공하여야 함
지체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개시예정일까지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상금을 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함 • $\text{Min}(\text{지체일수당 총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일천(1,000)분의 일(1)에 해당하는 금액, } [](\text{kW}) \times \text{지체일수} \times \text{일평균 보장발전시간} \times \text{공급인증서 매매계약상 (SMP+REC)단가} \times \text{공급인증서(REC) 가중치})$ • 한도 없음

4) 관리운영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위탁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자가 거래서류에 따라 가지는 권리나 권한의 대행(보험의 가입 및 청구업무 포함) • 위탁자가 거래서류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 의무의 대행 • 위탁자가 금융서류에 따라 담보를 설정하는 의무(발전수입금 채권에 대한 담보 설정 절차 포함)의 대행 • 운영기간 중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 위탁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사업부지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의무의 이행 • 위탁자가 공급인증서 판매자로서 부담하는 모든 의무의 이행
관리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자는 위탁한 업무에 따른 관리운영비로 연 []백만원/MW 을 지급 • 관리운영비에는 보험료,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전력비, 통신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용, 송전선로 확보를 위한 도로사용료 포함 • 대수선비는 별도로 연 5백만원/MW로 적립한 금액 한도 내에서 업무수행 • 지급 조건: 관리운영계약에 따른 수탁자 제반 의무의 적법하고 완전한 이행
사업부지 및 사업시설 관련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기간 동안 본건 사업부지의 유지, 확보 및 기간연장에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로 함 • 본건 사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상실, 임대차 계약 해지 등으로 본건 사업시설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체 사업부지를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대책을 제공해야 함. 이 경우 수탁자는 본건 사업시설의 철거에 필요한 비용 및 이전 설치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하고, 위탁자 및/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함
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건사업시설과 관련된 민원은 관리운영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함
발전시간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PC업체의 최소발전시간보장 의무 소멸시점부터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관리운영사가 일평균 []시간의 발전시간(효율 감소분 0.5%/년 반영)을 보장함.
기타자금보충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인증서매매계약 중도해지시 자금보충: 보장발전량 미달시의 손실보전금액과 공급인증서 매매대금 부족분에 대한 손실보전금액의 합계액 • 상업운전 중단시 자금보충: 수급인들의 귀책사유로 상업발전 중단시 대출원리금 상환부족분 자금보충 •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상 공급인증서 매매량 부족시 자금보충: 공급인증서 미공급에 따른 위탁자의 손해 및 공급인증서 매매대금 전액 배상
성과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자는 보장발전시간(일평균 []시간(효율 감소분 0.5%/년 반영))을 초과하여 매출액이 기준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 매출액의 30% 상당액을 성과보수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별첨 4) 재무모델 작성시 주요 가정사항

구분	내용	비고
시점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공시점: 2020년 5월말 • 상업운전 개시시점: 사업자가 제시 • 운영기간: 상업운전 개시시점으로부터 20년 	운영기간: 준공시점 부터 20년
발전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사와 관리운영사가 보장하는 발전시간 제시 	
SMP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9.98원/kwh 	
REC단가 및 가중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C단가=(SMP+REC 제안가격)-89.98원/kwh • REC가중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별표2> 참고 	•상한가격 = 156.5 원/kwh
설비효율감소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년 	
투자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비와 토지금액은 사업자가 제시 • DSRA금액: 상환기간중 1분기 원리금 상환액 최대값 • 건설기간이자 계산하여 반영필요 • DD비용(법률,회계,기술): 25백만원(SPC기준) • 자금관리수수료: 5백만원(SPC기준) • 금융자문수수료: 대출금액의 1% • 담보설정비용: 10백만원/MW • 동서햇빛드림펀드 지분투자 수수료: 3백만원/MW • SPC최소보유현금: 20백만원/MW • 운영개시시점 운영보험료: 7백만원/M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C최소보유현금은 실제로 지출되는 금액이 아님 • 투자비 구성항목들은 투자시점에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금액임 • 기타 사업비가 있으면 사업자가 제시 필요
운영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운영비: 25백만원/MW(운영보험료 포함) • 대수선비: 5백만원/MW • 제세공과금: 1백만원/MW • 관리운영에 대한 총괄관리감독 및 기술자문수수료 : 3백만원/MW (최소금액은 3백만원임) • 사무위탁수수료: 10백만원(SPC 기준) • 자금관리수수료: 2백만원(SPC 기준) • 관리운영에 대한 성과보수: 보장발전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매출액의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 구성항목들은 운영기간 동안 매년 발생하는 금액임
감가상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정액법 적용 	
토지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종료시점에 매각가정(매각대금은 현재시점 매입대금) 	

구분	내용	비고
대출이자율	• 본 공고문 3페이지 대출조달 내용 참고	
우선주 투자	• 본 공고문 3페이지 지분투자 내용 참고	
원리금 지급	• 최초인출시점으로부터 6개월단위 지급	
각종 운영비 지급	• 원리금 지급 시점에 대출원리금보다 후순위로 지급	
배당금 지급조건	• 별첨 3) 대출약정 주요내용 참고	

(※) 위 가정사항은 프로젝트 IRR 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투자승인 혹은 자금집행시 변경가능하나 제안된 세후사업수익률(Project IRR)이상으로만 변경 가능함.

붙임 1) 신한BNPP동서햇빛드림펀드 투자대상사업선정 참여 신청서

신한BNPP동서햇빛드림펀드 투자대상사업 선정 참여 신청서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전화	
	담당자명		담당자 전화	
	이메일	연락 가능한 이메일주소 적어주세요		
	주소			
발전소	발전소명		에너지원	
	발전사업허가용량	kw	발전사업허가번호	
	소재지			
참여사	시공사			
	관리운영사			
내용	가중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및연료혼합의무화제도관리운영지침 <별표2> 참고		
	가중용량	용량(kw)×가중치 :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작성		
	계약기간	20년		
	제안가격	SMP+REC = () 원/Kwh (가중치를 무시하고, 1.0기준 155.8, 156.5 등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입)		
	연간예상매매량	REC/년 (이용율 15%일괄 적용)		
<p>'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에 관한 운영규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본 참여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주) 사장 귀하</p>				

붙임 2) 사업계획서

1. 참여자 및 발전소 개요

상호(법인명)		대표자		
발전소명		발전사업허가용량		kW

주) 발전사업허가용량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작성

2. 사업진척도

발전사업허가일(필수)	개발행위허가(필수)	사용전검사일(선택)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3. 주기자재 사양

3.1 태양광 모듈

구분	제1순위		제2순위	
모델명				
제조회사				
제조국				
출력(W)				
매수(장)				

* "음영란"에는 2종류의 제품을 혼용할 경우에만 작성, 1종류만 사용할 경우는 공란 처리

3.2 태양광 인버터

구분	제1순위		제2순위	
모델명				
제조회사				
제조국				
출력(kW)				
매수(개)				

3.3 변압기

구 분	제1순위		제2순위	
모 델 명				
제 조 회 사				
제 조 국				
출 력(kW)				
매 수(개)				

* “음영란”에는 2종류의 제품을 혼용할 경우에만 작성, 1종류만 사용할 경우는 공란 처리

4. 시공 및 운영계획: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기술

1) 태양광사업 입지(환경, 민원포함)

2) 시공계획

3) 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계획

4) 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극대화 방안

*사회적 가치: 안전, 상생협력,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공헌 등

붙임 3) 투자대상사업 평가기준 자기평가서

기준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제시내용	산정점수
재무적 평가 (75점)	입찰가격	{(상한가격-입찰가격)/상한가격}*배점 ※상한가격 = 156.57원	[] 원	[]점
	P-IRR(%)	(제시수익률-5.0%) x 100 x 배점	[] %	[]점
	재무모델의 적정성	P-IRR / 재무모델 전반의 오류여부 (적정 5점, 경미한 오류 3.5점, 중대한 오류 2점)	N/A	(주2)
	각종 계약서 주요내용에 대한 수정의견	각종 계약서 주요내용(별첨 3 참고)에 대한 수정의견 (의견 없음 5점, 경미한 변경을 요하는 의견 3.5점, 중대한 변경을 요하는 의견 2점)	“붙임 4) 각종 계약서 주요 내용에 대한 수정의견” 제출	(주2)
사업 평가 (15점)	사업진척도	1) 공사계획신고 완료된 사업 : 2점	[]	[]점
		2) 상업운전 예정시점 : 8월이내 3점, 10월이내 2점, 12월이내 1점, 이후 0점	[]	[]점
	사업계획서 평가	1) 태양광사업 입지평가(환경, 민원포함) 2) 시공계획의 적절성 여부 3) 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능력 4) 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극대화 방안 *사회적 가치 : 안전, 상생협력,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공헌 등 * 우수 5점, 보통 3.5점, 미흡 2점	“붙임 2) 사업계획서” 제출	(주2)
사업규모	사업시행법인의 발전사업허가규모((kW)- 900kW)÷1,000 *최대 5점(단, 동일사업주 최대 10MW 까지 허용)	[] kW	[]점	
참여사 평가 (10점)	EPC社 시공실적	(EPC 시공실적(MW)-10MW)÷10 *최대 5점	[] MW	[]점
	O&M社 운영실적	(관리운영실적(MW)-10MW)÷10 *최대 5점	[] MW	[]점

(주1) 자기평가서는 [] 부분을 기입할것. 사업자가 자체 평가한 점수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검증 예정

(주2) 이 부분은 당사에서 외부 자문기관을 통해 평가할 예정

붙임 4) 각종 계약서 주요 내용에 대한 수정의견

구분	현재 내용	변경요청 내용
	.	

붙임 5) 질의서 양식

공고문 페이지	관련내용	질의사항
	.	